

개정 전	개정 후
	<p><u>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 다만,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### ■ 법률 부칙

제8조(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 
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